

기반시설 심사기준

구 분	심사 항목	배점	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	비 고
계	4개 분야 9개 항목	100		
사업대상 주변현황 (30)	▶ 수혜기업 수 (제조업)	15	• 30개 사 이상 : 15 • 20개 사 이상 : 9 • 5개 사 이상 : 3 • 25개 사 이상 : 12 • 15개 사 이상 : 6 • 3개 사 이상 : 1	
	▶ 수혜인원 (종사자 수)	15	• 500명 이상 : 15 • 300명 이상 : 9 • 100명 이상 : 3 • 400명 이상 : 12 • 200명 이상 : 6 • 50명 이상 : 1	
사업의 필요성 (35)	▶ 타 사업 대체 가능 여부	15	• 타 사업 대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: 15 • 타 사업 대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 : 7 • 타 사업에서 추진중인 사업 : 비대상	
	▶ 개선 시급성	20	• 시설 미설치 또는 시설개선 매우 시급 : 20 • 시설개선 필요 : 10 • 시설개선 불필요 : 비대상	
시군 지원실적 및 재정여건 (20)	▶ 시군별 과거 3년간 도비 지원 실적	10	• 2억원 미만 : 10 • 6억원 미만 : 6 • 10억원 미만 : 2 • 4억원 미만 : 8 • 8억원 미만 : 4 • 10억원 이상 : 0	
	▶ 시군 재정 여건	10	• 20 × 차등보조율(도비보조율)	
기업인증 (15)	▶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	5	•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 : 5 •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미만 : 0	
	▶ 성인지 반영	5	• 수혜여성기업 비율 또는 수혜여성종업원 비율이 20%이상 : 5 • 수혜여성기업 비율 또는 수혜여성종업원 비율이 20%미만 : 0	
	▶ 뿌리기업 비율	5	• 뿌리기업 비율 20%이상 : 5 • 뿌리기업 비율 20%미만 : 0	

중소기업 심사기준

구 분	심사 항목	배점	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	비 고
계	4개 분야 7개 항목	100		
기업현황 (30)	▶ 기업 운영기간	10	• 20년 이상 : 10 • 15년 이상 : 7 • 10년 이상 : 4 • 5년 이상 : 1	
	▶ 고용인원 (종업원 수)	10	• 10명 미만 : 10 • 20명 미만 : 8 • 30명 미만 : 6 • 40명 미만 : 4 • 50명 미만 : 2 • 50명 이상 : 1	
	▶ 자체 개선여력 (순이익)	10	• 5천만원 이하 : 10 • 1억원 이하 : 8 • 1.5억원 이하 : 6 • 2억원 이하 : 4 • 2.5억원 이하 : 2 • 2.5억원 초과 : 0	
사업의 필요성 (35)	▶ 시설 노후화	15	• 건물 노후와 관계있는 지원품목(바닥도장, 방수 등) - 준공 후 경과 기간(년) - 5 (최대 15점) 예) 2011년 준공 : 2027년 - 2011년 - 5 = 11점 • 건물 노후와 관계없는 지원품목(적재대, 작업대 등) - 시설 미설치 또는 매우 노후 : 15 - 시설 노후 및 열악 : 7 - 시설 양호 : 0	지원품목이 취여 있을 경우 사업비 비율에 따라 배점 (최대 15점)
	▶ 근로자 안전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	20	• 심각한 위험 존재(사고 위험 높음) : 20 • 잠재적 위험 존재(경미한 사고 가능) : 10 • 영향없음 : 0	
사업계획 평가 (20)	▶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	20	• 타당하며, 구체적 : 11 ~ 20 • 타당하나, 구체성 미흡 : 1 ~ 10 • 타당성, 구체성 미흡 : 비대상	
기업인증 및 가점 (15)		15	• 뿌리기업 /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/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/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/ 기업 RE100 참여 기업 /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/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/ 여성기업이거나 여성종업원 비율이 20%이상인 기업 • 1건당 각 3점, 최대 15점	

※ 뿌리기업 :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정의된 뿌리기업

※ 기업 RE100 참여기업 : 경기도 「기업 RE100」 참여기업 확인서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) 확인

※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: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) 상 무재해

※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: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 인증서(경기도 발급) 확인

- '산업재해 미발생기업'과 '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' 간 중복 가점 부여 불가

※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.1% 이상 장애인 고용